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
2002. 2. 7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2002년 1월 23일

· 회부일자 : 2002년 1월 23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97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2. 2. 7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한 철 환)

가. 제안 이유

-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매입자금 지원과 용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,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골자

○ 개발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및 용자 확대

- 개발기금 대상사업중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도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
-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유통안정을 위해 3억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도록 함

○ 운용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

- 이 율 : 연 5% ⇒ 연 3%
- 상환기간 : 1년만기 일시상환 ⇒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

○ 일부 규정 현실에 맞게 조정

- 조문 규정중 “운영” ⇒ “운용”으로 하고
-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⇒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로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응희)

-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매입자금 지원과 용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용자금의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은 농가의 어려움과 각종 금리가 저금리시대로 가는 추세를 볼 때 시의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6. 심 사 결 과 : “ 원안 가결 ”
7. 소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- 8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9. 별 첨

◎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- 충청북도지사제출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농·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”를 “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과”로, “운영관리”를 “운용관리”로 한다

제2조제2호중 “농촌소득 개발”을 “농·수산물 유통안정 및 농어촌소득개발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운영관리”를 “운용관리”로, “개발기금운영심의위원회”를 “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동조제3항제1호중 “운영계획”을 “운용계획”으로, 동항제3호중 “개발기금운영”을 “개발기금운용”으로 한다.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·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

제7조제2항제2호중 “운영자금”을 “운용자금”으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,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3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융자금의 이자는 시설자금은 연 3%로 하고, 운영자금은 연 5%”를 “융자금의 이자는 연 3%”로 한다.

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”를 “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”로 한다

제10조제1항중 “개발기금운영”을 “개발기금운용”으로, “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”를 “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”를 “특별회계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·제3항 및 제14조중 “운영”을 각각 “운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용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